「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8판)

2022. 3. 1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요

※ 8판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

<table>
<tr><th>구 분</th><th>종전(7판)</th><th>개정(8판)</th></tr>
<tr><td>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td><td colspan="2">■ 직무교육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
*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⑤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이수기간 유예) ① '20.2.4.~'21.6.9.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9.까지 이수해야 함 ② '21.6.10. 이후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하여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 '20.9.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이수해야 함

■ 기타 사항
- 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시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요청
-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실시간 화상교육 · 모바일교육' '22.6.30.까지 한시적 허용(p5~6 참고)</td></tr>
<tr><td>2. 교육시 방역관리 방안 (인원기준 등)
* 8판에서 변경된 내용</td><td>■ 인원기준
<table><tr><th>50인 미만(종전 100인 미만)</th><th>50~299인 미만(종전 100~499인 미만)</th><th>300인 이상(종전 500인 이상)</th></tr><tr><td>■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td><td>■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td><td>■ 원칙적 금지</td></tr></table>
■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관리방안
- (유증상자) 방역당국에 연락 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등 조치에 적극 협조·이행
- (교육생 출결관리)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td><td>■ 인원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다만,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²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관리방안
- (유증상자) 유증상자인 교육생은 격리한 후 해당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확진환자) 교육기관은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고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교육생 출결관리)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 음성의 경우 교육 복귀</td></tr>
<tr><td>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td><td colspan="2">■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교육 이수 근로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td></tr>
<tr><td>4. 시행시기</td><td></td><td>■ '22.3.10.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td></tr>
</table>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8판)’ 개정 내용

□ 인원 기준(8p)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다만,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²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한다면 교육 실시 가능)

□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관리방안(9p)

○ **(유증상자)** 교육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교육생(유증상자)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등의 장소에 유증상자를 격리하고 해당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다만, 고위험군(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의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

↳ ❶역학적 연관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 입국자), ❷의사소견서 보유자, ❸60세 이상자,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 ❹고위험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종사자

- 검사 결과, 양성이라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성이라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

○ **(확진환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교육기관은 사업장을 소독하고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육생 등에게 알리고 접촉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공지

* ❶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❷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❸동일 공간에서 교육하는 구성원으로 접촉 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미복귀 시 출석으로 미인정)
-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양성이나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잔여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PCR검사 결과 대기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
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
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참고]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2시간	▸ (일반)16시간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일용	▸(일반) 1시간 ▸(건설업) 4시간	-	▸ 1시간	▸ (일반)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 업무) 8시간
	관리감독자	-	▸ 연 16시간	-	-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일반	▸ 2시간	-	-	▸ 16시간
	단기·간헐	▸ 1시간	-	-	▸ 2시간

2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

□ 공통사항

○ 인원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을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다만,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²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한다면 교육 실시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을 **집체교육**으로 하려는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사업장 자체실시**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시 「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을 **준수**

  * 발열(37.5℃이상)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음식섭취 자제(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교육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붙임2)* 안내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부과 가능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붙임3)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붙임4)

○ **(유증상자)** 교육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교육생(유증상자)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등의 장소에 유증상자를 격리하고 해당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다만, 고위험군(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의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

↳ ❶역학적 연관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 입국자), ❷의사소견서 보유자, ❸60세 이상자,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 ❹고위험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종사자

- 검사 결과, 양성이라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성이라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

○ **(확진환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교육기관은 사업장을 소독하고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육생 등에게 알리고 접촉자*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공지

* ❶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❷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❸동일 공간에서 교육하는 구성원으로 접촉 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미복귀 시 출석으로 미인정)
-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양성이나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잔여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PCR검사 결과 대기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3 감독 ·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4 시행시기

○ **(시행시기)** ‘22. 3. 10.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주 소		연 락 처	
대 표		근로자수(남/여)	명(/)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훈련 환경 및 방역 상태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 매일 근로자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 측정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3) 근로자외 방문자에 대한 방명록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의심 증상 모니터링 등	1) 출결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기록(1일 2회 이상)	□ 예 □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로자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3)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위생·청결 관리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 예 □ 아니오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예 □ 아니오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예 □ 아니오	

※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2 . .

사업장명(교육기관) 명: 성 명 (인)

대 표 자 명: 성 명 (인)

붙임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21.7.1)**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붙임 3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방문자 등)가 확인된 경우

↓

즉시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

↓

의심환자 외 교육기관 내 모든 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및 방문자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의심환자 격리, 사업장 소독 등 적극 이행
① 의심환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
교육 복귀(상황 종료)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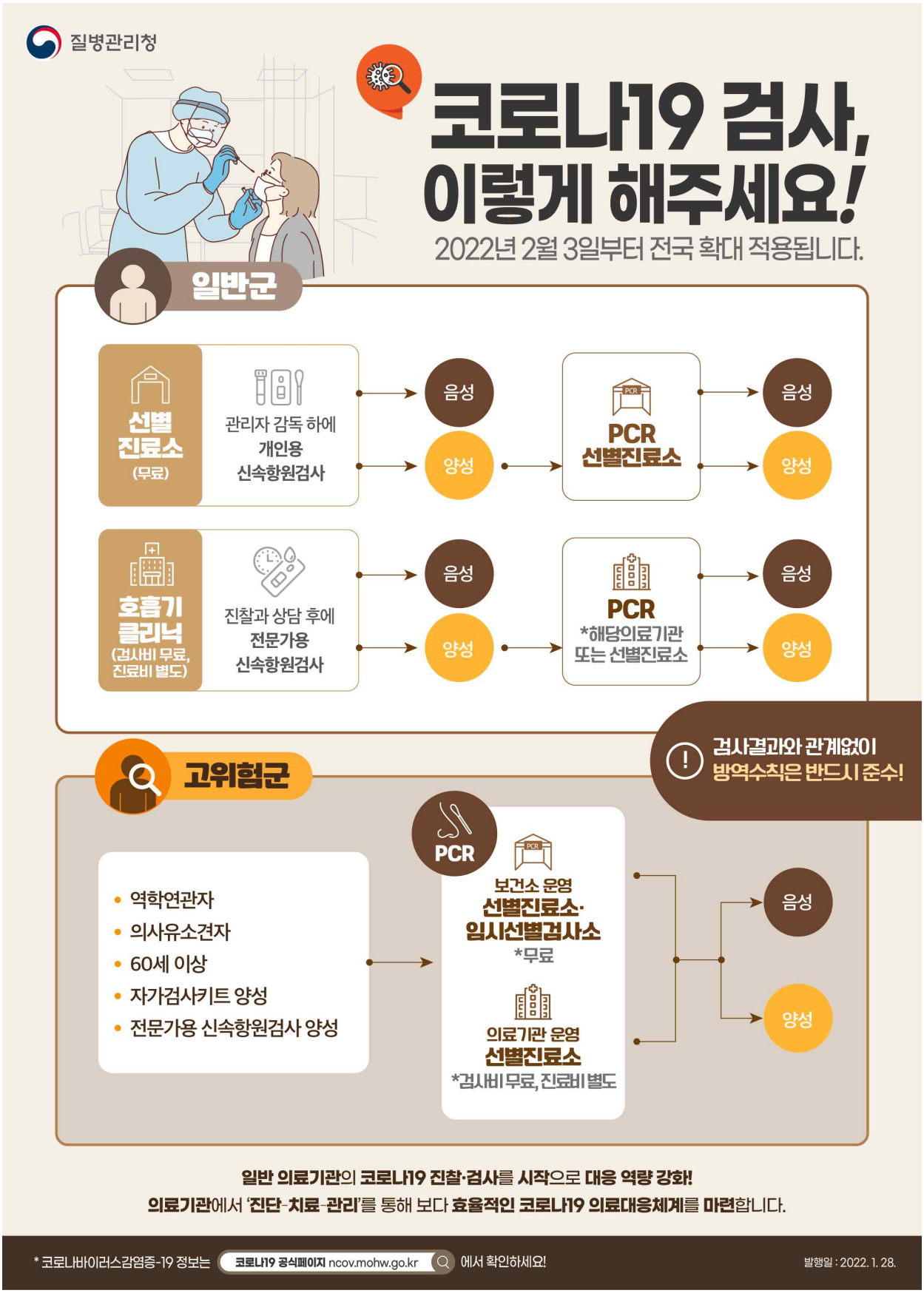
↓

② PCR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
잔여 교육 복귀	❶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❷ 사업장 내 상황 전파 (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방문자 등 포함)
	❸ 확진 환자와 접촉한 시람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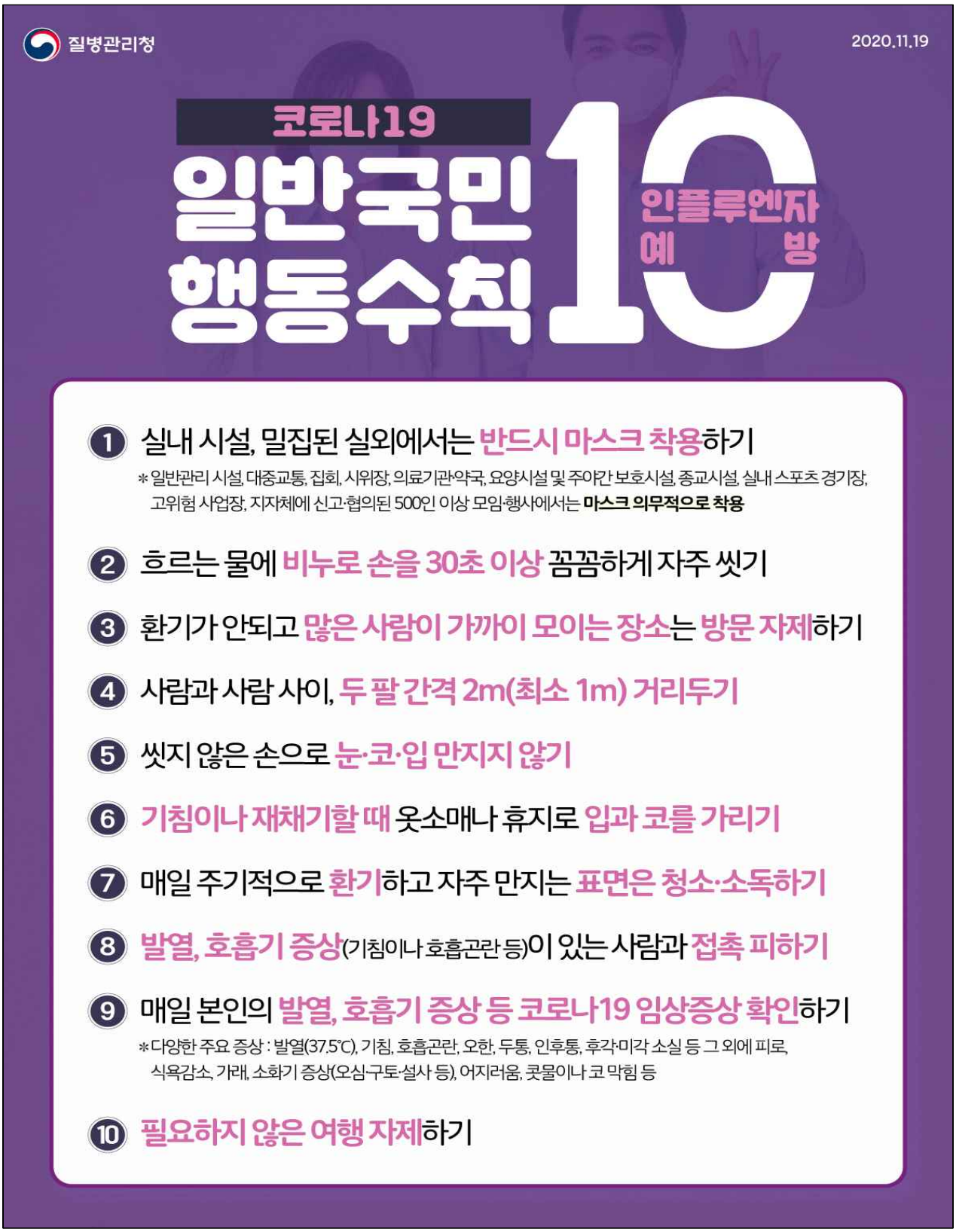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코로나19 검사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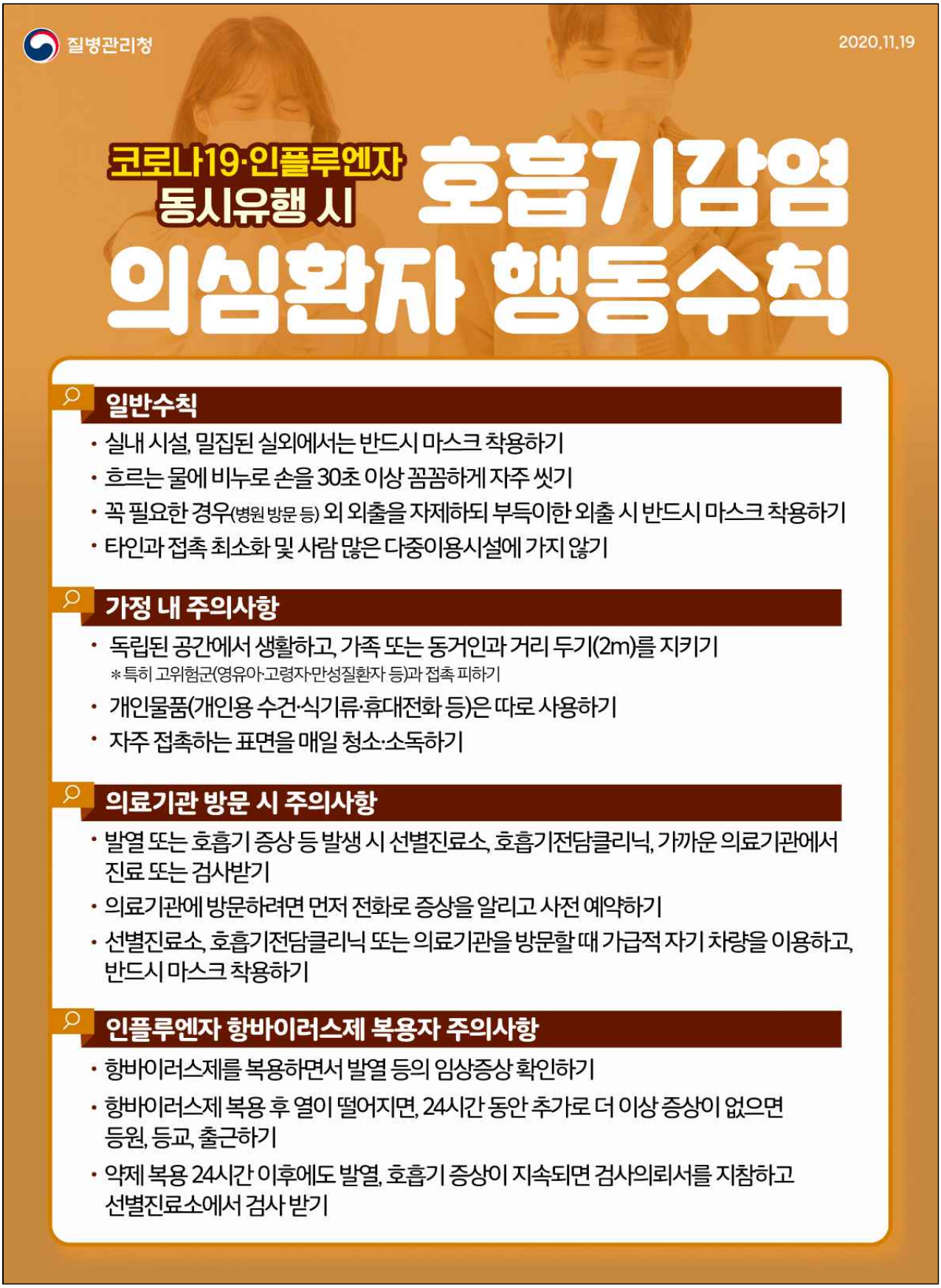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
일반군
선별 진료소 (무료)
관리자 감독 하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양성
PCR 선별진료소
음성
양성
호흡기 클리닉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별도)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양성
PCR *해당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음성
양성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
고위험군
PCR
역학연관자
의사유소견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보건소 운영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무료
의료기관 운영 선별진료소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별도
음성
양성
일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찰·검사를 시작으로 대응 역량 강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 2022. 1. 28.

붙임 4 |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 일반국민 행동수칙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 마스크 착용(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질병관리청

2021.4.26.

마스크 착용!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

실내
- 상시 마스크 착용

실외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및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